

I. 이단치교적 교단제제를 위한 소고

1. 이끄는 말

이단치교의 통치 교화는 대종사님 정산 종법사님 대산 종법사님 세분 스승님의 경륜으로 원불교만의 독창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가 지니는 의미를 깊이 연구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제생의세의 경륜을 유감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교정 방향을 돌이켜 보면 이단치교의 방향으로 나아온 것은 사실이나 완벽한 이단치교의 체제가 되었느냐 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그러한 생각의 일단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이단치교의 의미

이단치교를 논의할 때 그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논의의 중요한 근저가 된다. 따라서 그 의미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논자는 두 가지 면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교화적인 면에서의 의미이다. 대종사님께서 처음 교화를 시작하실 때 믿고 따르는 사십여명의 제자 가운데 특히 신심굳은 아홉사람을 골라 회상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십인 일단의 단 조직 방법을 제정하시며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다”하시었다. 그러므로 단장 한 사람이 아홉 사람에게만 공을 드리면 몇억만의 수라도 쉽게 지도할 수 있는 간이한 교화조직이 바로 교화단이다. 둘째는 행정적인 면에서의 의미이다. 원기 16년에 발행된 통치 조단규약에 보면 정수위단은 단의 原始로서 단원에게 본회의 모든 규

칙과 교리를 훈련하고 의견제출을 장려하여 단의 목적을 總監하도록 하고 있어 통치조단이라는 제목이 교화를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의 의미는 교단의 연륜이 더함을 따라 점점 행정적인 의미가 첨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기 27년에 개정된 불법연구회 회규에 보면 수위단회를 종법사를 보좌하는 최고기관으로 하여 종법사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일로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도록 하고 있다. 해방이후 원불교로 정식 교명을 선포하고 개정한 원기 33년의 교헌에는 수위단회를 종법사의 최고 자문기관으로 하고 5개항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종법사 추천에 관한 것, 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 직원 선정, 법계 승강,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다시 원기 39년 4월 정산 종법사는 수위단회와 교무연합회에 유시를 내려 수위단회의 위신과 직능을 강화하여 교단 통치의 핵심체를 삼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산 종법사님의 말씀은 원기 44년과 49년에 개정된 교헌에 반영되어 수위단을 교단 최고 결의 기관으로 하고 9개항의 결의 사항을 두는데 그것은 종법사 선거, 수위단 보궐 단원 후보추천, 법강항마위 이상 법계 승강, 교서편정 교헌 교규제정 개폐,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대산 종법사는 종법사 취임 법문에 종법사는 주로 주법의 책임에 당하고 교정에 대하여서는 정수위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이단치교의 실을 충분히 거양하도록 제시하고 원기 72년에 개정된 교헌에서는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 결의 기관이며 최상위 교화단으로 규정하고 9개항의 의결사항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교서 편정과 교헌 교규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 승강에 관한 사항, 교리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교헌 교규의 판정에 관한 사항,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원기 77년 4월 8일 대산 종법사는 교정원과 수위단회에 전달한 내명서에서 이단치교 법치교단 운영의 원칙 확립과 그 전통 수립에 대하여 지시하기를 나는 취임이후 지금까지 대종

사님과 선종법사님의 대경륜과 포부를 전교도가 똑같이 받들게 하기 위하여 이단치교 법치교단의 정통적인 조직제도를 정비하여 실행하도록 주지 강조 또는 특별 유시등으로 수없이 통보한 바 있다고 하시고 양 중앙단원과 양 원장, 법무실장등이 합석하여 이단치교 법치교단의 기본적 운영에 합의를 하고 보고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동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수위단회의 위상과 기능과 역할이 교현에 나타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더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교단사의 흐름을 보면 이단치교의 의미에는 말 그대로 수위단으로써 교단 통치의 핵심체를 삼고자 하는 스승님들의 경륜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이단치교의 방향

이러한 의미에서 이단치교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수위단이 교화의 핵심체가 되어야 하고 둘째 수위단이 교단 통치의 핵심체가 되어야 한다. 교화 핵심체인 수위단은 주법인 종법사를 머리로하여 교화단의 조직을 통해서 그 법을 알리고 훈련해서 펴 나가야 할 것이고 통치의 핵심체인 수위단은 교단의 대표인 종법사를 중심해서 공의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해서 명실상부한 교단 통치의 핵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단치교의 방향에서 본 현 제도

이러한 면에서 현재를 검토해 보면 대체적으로는 이단치교적 체제에 접근되어 있다고 생각되나 완전한 이단치교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교화핵심체인 수위단의 기능에서 보면 현재 출가교화단 관리는 수위단회에서 관장되고 있으나 재가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화부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경우 주법

인 종법사를 보좌해서 그 법을 훈련하고 실천해나가는 중심적 축을 수위단이라 할 때 교화부가 수위단의 지도아래 일사분란하게 나가는 체제가 되어 있지 못하며 또 만일 수위단이 그러한 기능을 하려하면 교정원장과의 역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

통치 핵심체인 수위단의 기능에서보면 현재 교헌상 수위단은 교단최고의결 기구로 교정 감찰 양원과 함께 삼권 분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의결 내용을 보면 교단 최고 통치권자인 종법사의 제반 권한을 의결로써 보좌토록 하여 이단치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통치적 의미의 기능을 강력히 수행해 나가려고하면 자연 집행기구인 교정 감찰 양원과 책임 소재와 권한의 한계에서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고 심하면 갈등 요인으로 까지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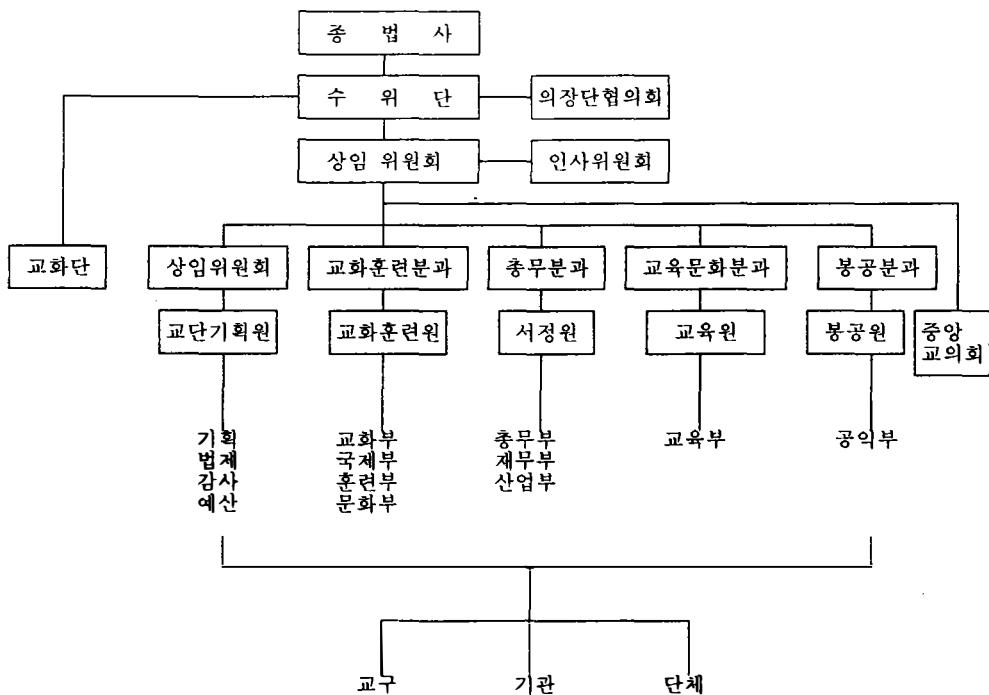
또한 현행 제도는 핵인 수위단원이 중앙부서에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불비하여 합력으로 교단을 같이 책임 운영해 나가는 이단치교적 기능을 할 수 없다.

5. 이단치교적 교단 체제의 구상

이름과 실지가 부합되는 이단치교의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방향이 서져야 하리라 본다. 첫째, 종법사를 정점으로 해서 수위단이 교단 교화와 통치의 핵심이 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수위단 밑에 교화단과 통치 기구를 일치시킨다. 세째, 교화단 관리는 현행의 규정을 연구 보완 발전시켜나간다. 네째, 통치기구는 수위단의 각 분과와 원을 일치시킨다. (이때에 각 분과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것도 한 유력한 이단치교의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각원의 정책 조정 통제 기능은 수위단에 두되 상임위원장의 위원장은 대표되는 중앙단원이 맡는다. 여섯째, 이러한 제도를 구상할 경우 현재의 수위

단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일곱째, 교단의 인사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수위단에 둔다. 여덟째, 각 원의 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수위단의 결의를 통해서 중요 정책을 수행한다. 아홉째, 각 법인의 이사장은 소관 사무의 원장이 된다.

6. 이단치교의 방향에서 본 혐제도



7. 맷는 말

이상으로 교단에 몸담고 살면서 또 법문의 말씀을 받들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앞으로 교단이 점점 커지면서 총부의 축을 어디에 둘 것인지, 세계로 뻗어 나갈 때 세계 원불교의 중심인 총부의 위상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공화제도의 체제로 밝혀주신 이단치교의 통치적 의미는 어떻게

살려 받들어야 할지, 전체가 조화와 화합을 이루면서 일사분란하게 일원대도의 대법륜을 굴리는 후천의 새종교로서의 교단 모습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할지를 생각하며 정리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해 보았다.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